

##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

제정 2002. 1. 9 조례 제 378호  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752호  
2009. 4. 24 조례 제1017호  
일부개정 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  
일부개정 2022. 2. 28 조례 제227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·이용·보전·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 4. 24, 2022. 2. 28>

제2조(농촌용수구역 등) ① 농촌용수구역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상의 구역별·수계별 단위로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(지표수 및 지하수)를 말한다.

③ 농촌용수 구역별·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[제목개정 2022. 2. 28]
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1.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
2.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
3.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
4.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
5. 농촌용수시설의 관리
6.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
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, 학술단체,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28>

제4조(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2. 2. 28]

제5조(농촌용수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, 농촌용수 공급,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·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·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·보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28>

제6조(농촌용수의 오염방지)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, 정기적 수질검사, 오염관측망 설치운영, 오염유발시설의 개선·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4. 24, 2022. 2. 28>

제7조(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)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1.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·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
2.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

② 시장은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·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,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9. 4. 24, 2022. 2. 28>

[제목개정 2022. 2. 28]

제8조(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)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제9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0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1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2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3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4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5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6조 삭제 <2022. 2. 28>

제17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① 시장은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1.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
2.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
3.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
4.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

② 삭제 <2022. 2. 28>

제18조(사용제한 등의 공고)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

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

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, 기간, 구역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2. 2. 28>

제19조(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약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② 삭제 <2022. 2. 28>

[제목개정 2022. 2. 28]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2. 28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752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101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22. 2. 28 조례 제22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